

秘密維持契約書

주식회사 계양정밀(이하 "우리회사"라고 부름)과 (이하 "협력사 라고 부름)은 아래와 같이 秘密維持에 대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에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.

제 1 조(目的)

본 계약서는 "우리회사"와 "협력사"가 진행하는 견적검토, 제품공급, 공동개발 및 제반 업무제휴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"협력사"가 "우리회사"로부터 취득/습득한 제반 비밀 정보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秘密 情報의 範疇)

본 계약서에서 의미하는 비밀정보란 "협력사"가 "우리회사"와의 업무 진행 과정에서 접하는 설계도면, 제품, 3D Data, 제품 제작, 영업 비밀, 고객 및 "우리회사"직원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비밀 정보로 간주하며 "우리회사"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/유포된 사항은 제외한다.

1.공급 제약

"우리회사"에서 출도한 도면 및 도면에 있는 제품구조, 3D Modeling 을 제 3자에게 공급할 수 없다.

2.공급제약의 기준일

"우리회사"의 제품 도면, 모델링자료 검토에 해당한다.

제 3 조(適用範疇)

본 계약은 "우리회사"와 "협력사"간의 모든 견적, 발주, 주문 및 계약에 포괄적으로 적용된다.

제 4 조(責任과 義務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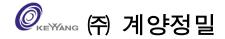
"협력사"는 비밀 유지와 관련하여 아래의 각 항목의 일반 원칙을 준수 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.

- 1."협력사"는 작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작업과 직접 관련되는 자에 한해 "우리회사"의 정보를 보관, 점유, 개발토록 하며, 그 사용을 제한 하여야 한다.
- 2."협력사"가 취득/습득한 "우리회사"에 관한 제반 정보는 "우리회사"의 재산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제 3 자나 경쟁 업체에게 누설, 공개할 수 없으며 "우리회사"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본을 포함한 모든 관련 서류를 즉시 "우리회사"에게 인도하여야 한다.
- 3."협력사"가 업무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"우리회사"의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 시 사전에 "우리회사"의 서면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.
- 4."협력사"는 "우리회사"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 수행 중에 취득/획득한 "우리회사"의 비밀 정보에 근거하여 "우리회사"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제작, 판매할 수 없으며, "협력사"가 이를 위반하고 제작, 판매 시 "협력사"는 제반 행위에 대한 일체의 책임과 보상 혹은 변상의 의무가 있다.
- 5."협력사"는 "우리회사"가 발주 의뢰한 제품의 제작 완료 후 납품과 동시에 해당 제품에 관련된 제반 비밀 서류를 "우리회사"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.
- 6."협력사"의 대표자는 "협력사" 전체 임직원을 대표하여 본 비밀유지 계약에서 명시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고 그 각서를 본 계약서에 첨부하며 "협력사" 전체 임직원의 비밀유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연대하여 보증하여야 한다.

제 5 조(違約罰金)

"협력사"의 직, 간접적인 원인에 의해 제 4조(책임과 의무)의 위반 사실이 발생될 경우 "우리회사"는 발생된 손실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발주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기 지급된 도급비용(계약금, 중도금, 잔금) 즉시 회수한다.

KYPC-12-034 비밀유지 계약서 1/3



제 6 조(秘密 書類의 取扱)

"협력사"는 "우리회사"에게서 제공받은 정보를 다음의 각 호에 의거하여 취급. 관리 하여야 한다.

- 1."협력사"는 책임 관리자를 선임하여 "우리회사"의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게 하고 관련 대상자에게도 본 비밀 유지 계약서의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2."협력사"는 "우리회사"의 비밀 서류가 "협력사"의 사내, 외로 누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안 관리하여야 한 다.
 - 3."협력사"는 임의로 "우리회사"의 비밀 서류를 복제, 복사하지 못한다.
- 단, 업무상 필요한 경우 "우리회사"에 의뢰하여 재교부 받거나 "우리회사"의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한 후 복제, 복사하여 사용 할 수는 있다. 이 경우 생산된 사본의 관리에 대한 제반 책임은 본 계약 제 4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다.

제 7 조(效力)

1.본 계약서의 효력은 체결일로 부터 1년간 지속되며 별도의 개정 혹은 추가가 없을 경우에는 1년씩 자동 연 장되며 당사와의 최종 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그 효력이 유지된다.

2.공급 계약, 주문, 발주등에 별도로 비밀 유지와 관련한 언급이 있을 시에는 각각의 계약서가 우선 적용되며 상충되지않는 제반사항은 본 비밀유지 계약서를 포괄 적용한다.

제 8 조(損害賠償)

"협력사"는 본 계약 위반으로 "우리회사"에게 끼친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하며 동시에 계약위반과 관련 된 모든 민,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.

- 1."협력사"는 고의, 과실, 부주의 등으로 "우리회사"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내용을 즉각 "우리회사"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"우리회사"에게 입힌 손해금액 일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.
- 2.손해금액의 산정은 발생 당시의 해당제품 및 해당정보의 시장가치, 시장점유률, 시장 전망, 잠재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3."우리회사"는 제 8 조 1항에 의해 명확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정된 추정손해금액을 "협력사"에게 사전에 서면 통보한 후 제 3 조의 발주계약 관련 용역금액 등에서 공제 할 수 있다.

제 9 조(解釋)

본 계약서의 각 조항에 대한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"우리회사"와 "협력사"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 관례나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상호 합의 하에 해석 하여야 한다.

제 10 조(特約)

"우리회사"와 "협력사"는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로 개별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제 11 조(管轄 法院)

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"우리회사"가 지정한 관할 법원으로 한다.

제 12 조(其他)

"우리회사"와 "협력사"는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에 서명 날 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2013 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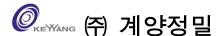
"우리회사" "협력사"

경북 김천시 응명동 1012-4

주식회사 계양정밀 주식회사

대표이사 정 병 기 (인) 대표이사 (인)

KYPC-12-034 비밀유지 계약서 2 / 3



비밀유지각서

소 속 업 체 명 :

직 위:

성 명:

주민 등록 번호 :

업체소재지:

상기 본인은 주식회사 계양정밀의 협력사 임직원으로서 회사가 ㈜계양정밀과 체결한 비밀유지계약을 성실히 수행하고 준수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이 유불문하고 주식회사 계양정밀의 조치에 따르겠으며 위반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하고 이에 본 비밀 유지각서를 제출합니다.

2013 년 월 일

각 서 인 : (서명)

소속업체

대표이사 : (인)

KYPC-12-034 비밀유지 계약서 3 / 3